반려동물 키우기 전 꼭 확인해야할 것은?

"분양 전 건강상태·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가족 구성원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생각
동물판매업 등록 업체 여부 확인도 필수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주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반려동물 입양률은 낮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인 4명 중 1명(23.2%)은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샀다고 답변했다.

그에 반해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9%)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이 아닌 입양이 필수"라는 캠페인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반려동물 구입이 현실적으로 대세인 상황에서 구입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했다. 동물 생산, 판매, 장묘, 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 반려동물 영업장의 종류는 모두 8종으로 동물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전시업, 운송업이다.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17개소)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및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외에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및 경미한 위반사항(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영업등록증과 요금표 등을 게시지도(11개소)하고, 시설 구획 지도(2개소) 등도 있었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분양받기 전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함께 생각하라고 권했다. 반려동물 입양 후 생활패턴과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판매업체를 통해 분양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부염 유무나 눈, 코, 귀, 항문 부위 청결상태 및 예방접종 이력과 구충제 복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일, 판매금액, 동물 건강 문제시 대응방법이 포함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교부받아야 한다면서 동물판매업체와 동물 정보도 필수 확인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은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구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질병 발생 시 판매처에 즉시 연락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거나 협의해야 한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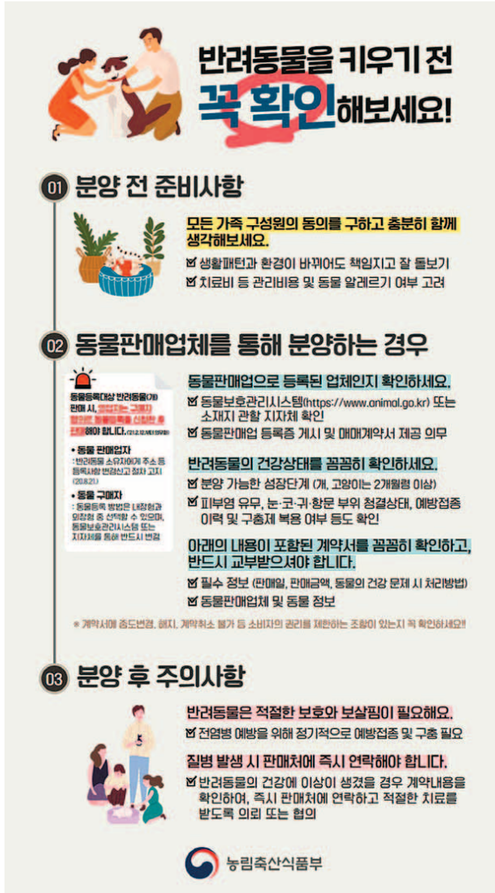

"반려동물 등록하면 보험 지원" 경기도 유기동물 줄이기 온힘

남양주·과천·성남, 내장 칩 등록시 1년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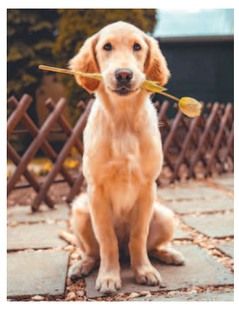
전국 지자체 중 유기동물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남양주, 과천, 성남시와 함께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펫뉴스

경기도가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등록제를 널리 알려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이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반려견의 입원·수술·치료비 등을 보험에서 부담해주고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 반려동물을 공격해 끼친 손해도 부담해준다. 올해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과천·성남 등 3개 지자체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을 한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무료 가입된다.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 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한다.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 원이다. 보험기간은 남양주시의 경우 2020년 8월 1일~2021년 7월 31일, 과천시는 2020년 9월 8일~2021년 9월 7일, 성남시는 2020년 11월 20일~2021년 11월 19일까지로 1년 동안 적용된다.

만약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칩을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등록 승인일부터 1년 동안 보험 가입이 적용된다. 반려견의 연령·병력·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유기동물의 수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아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경기도의 누적 유기동물은 9만7000여 마리에 달한다.

박란희 객원기자

정부가 야생동물의 전시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라쿤, 미어캣, 북극여우 등을 손님들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의 영업이 어려워졌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쯤 법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펫뉴스

라쿤·미어캣·앵무새 등 '야생동물 카페' 금지된다

환경부, 새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계획 시행
동물원 등록된 곳 이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전국 곳곳에 위치한 야생동물 카페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야생동물 카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게다가 좁은 실내에 야생동물 여러 마리를 모아놓을 경우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 있는 야생동물 카페에서 동물 전시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카페는 라쿤, 미어캣, 앵무새, 왈라비, 북극여우 등 야생동물을 카페 안에 키우고 손님들이 보거나 만질 수 있도록 한 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 카페는 지난 5월 기준 전국에 47곳이 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골자로 한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또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야생동물 카페 또한 전염병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받은 야생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여 동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컸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카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규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향후 동물원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것을 금지한다. 동물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이상 혹은 50마리 이상 동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카페만 허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채울 수 없는 대부분의 야생동물 카페는 영업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쯤 법이 통과되고, 이후 3년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승 객원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